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인 분양대상자로 선정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및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소계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	압류	기타
신청인수		296	244	48	4	50명 25건	331	303	3	2	2	14	7
권리자별 관리처분 (단위:인)	권리자별	대상	분양				청산·수용·협의매수		그 밖의분				
	계	431	276	272	1	3	155						
	토지및건축물소유자	370	244	240	1	3	126						
	토지소유자	55	28	28			27						
	건축물소유자	6	4	4			2						
소유권 외의 권리	대상	331건		이전설정		200건		해지 또는 소멸		131건			
세입자 대책	대상	654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		233	주거이전비 지급		294	비대책		360		
정비 기반 시설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모(㎡)	설치비용(원)	관리청	종 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도 로	대로3-40외5	15,129.50	44,995,304,700	성북구	도 로			13,939.33	13,939.33			
	녹 지	녹지	5,274.80	14,492,849,950	성북구	공공공지			89.00	89.00			
	학 교		19,464.20	존 치		주차장			609.00				
	공공공지	공공공지	1,032.40	2,407,155,900	성북구	노인정			146.00				
	공공청사	공공청사	299.50	880,992,500	성북구	치안센터			227.00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시설	450.30	1,378,249,500	성북구	공원			107.00				
						청소년수련시설			312.00	312.00			
					사회복지시설			125.00	125.00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 행 전(분양대상 종전가액)					시 행 후(분양예정 추산액)							
	계	토 지	건 축 물		계	대 지	건 축 물						
	64,120,840,420	52,409,256,840	11,711,583,580		390,537,302,000	건축시설에포함		390,537,302,000					
자 금 운 용	총 소요사업비		324,460,775,947		수입 추산액		390,537,302,000						
<p>이 인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5년 2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북 구 청 장 인</p>													
											수수료		
											없 음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그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명기하여 인가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에 의한 대지 및 건축시설별 후속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처분에 관계되는 다른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4.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공사완료고시전에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구청장이 투기방지를 위하여 권리변동신고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고시 후 행하는 이전고시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대로 하여야 합니다.